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유관기관 협력 조항, 소방활동 사실확인 조항 등 신설〉

■ 이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40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유관기관과의 협력 조문 신설	3
2. 소방활동과 관련한 사실확인조항 등 신설	9
3. 소방활동 방해행위 관련 가중처벌 조문 신설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재정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17.
3. 회 부 일 : 2024. 7.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요원에 대한 폭행 등 활동 방해가 반복되고 있음. 특히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13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처벌기준 강화 뿐 아니라, 유관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 등을 통해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활동에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경우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안 제16조의7 신설).

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의료기관의 장 등에 소방활동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현장 대원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8 신설).

다.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에 따라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50조의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유관기관과의 협력 조문 신설

개정안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안 제16조의7제1항 및 제2항 신설),

소방공무원 및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업무와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상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로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7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조의7(유관기관과의 협력)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③ 소방공무원 및 국가경찰공무원은 소방업무와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상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가.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협력 요청 규정 신설

현행법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제11조¹⁾),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시·도지사에게 소방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11조의2²⁾)을 두고 있으나, 소방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일

1) 「소방기본법」

제11조(소방업무의 지원)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지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지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지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規約)으로 정하여야 한다.

반적인 협력조향을 두지 않고 있음³⁾).

개정안 제16조의8제1항 및 제2항이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활동에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등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지사 등이 협력요청에 따르도록 한 것은, 소방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나,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규정한 현행법상의 지휘·감독 체계⁴⁾와 상충할 소지가

2) 「소방기본법」

제11조의2(소방력의 동원) ①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각 시·도지사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을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에 지원·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대원이 다른 시·도에 파견·지원되어 소방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소방활동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방활동을 수행한 민간 소방 인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보상주체·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자치법」은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있는 것으로 보임.

4)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12.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④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나.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규정 신설

개정안 제16조의8제3항은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상호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소방업무와 경찰업무 간 협력에 관하여도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제23조⁵⁾), 피난 명령(제26조⁶⁾), 화재조사(제32조⁷⁾) 등 개별사항에 대한 협조만을 규율할 뿐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간 일반적인 협력조항을 두지 않고 있음. 개정안은 소방업무와 경찰업무 간 협력을 강화하여 폭행 등의 피해로부터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고 원활한 소방활동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에서 소방공무원과의 협력 대상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정

5) 「소방기본법」

제23조(소방활동구역의 설정) ①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6) 「소방기본법」

제26조(피난 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7) 「소방기본법」

제32조(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①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교통, 경비, 생활안전 등은 주민밀착형 업무로서 소방활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소방공무원과의 협력 대상을 ‘경찰공무원’으로 하여 보다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⁸⁾⁹⁾).

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2. 소방활동과 관련한 사실확인 조항 등 신설

개정안은 소방청장 등으로 하여금 소방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소방활동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대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장 등의 협조를 받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16조의8제1항 신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조의8(사실의 확인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의료기관의 장 등에 소방활동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대원으로 하여금

수색 및 범죄

-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방청도 같은 의견임.

현행	개정안
	<u>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u> ② <u>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u> 1. <u>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u> 2. <u>실종자의 수색</u> 3. <u>사상자·주취자 등의 신원파악 및 인수할 보호자의 확인</u> 4. <u>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u>

현행법은 소방청장등이 ‘소방활동’ 전반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실조회 및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등

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⁰⁾.

참고로 ‘소방활동’이란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함¹¹⁾.

개정안에서 소방청장 등으로 하여금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유사한 입법례로서¹²⁾, 소방청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기초로 효율적인 소방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현장에서 초기 대응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필요하다는 입장임.

소방활동을 위해서는 화재 등 발생 시 피해자 위치 확인을 위한 전

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및 이 영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무

11)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소방차량 출동을 위한 주정차 차량 소유주 확인 등 사실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는 점,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요구조자의 위치나 응급환자의 병력(病歷) 사실 등 개인정보를 조회·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13))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각 호에 적시된 사항 중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와 같은 항목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이 있다고 보임.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봄.

1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소방활동 방해행위 관련 가중처벌조항 신설

개정안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등을 방해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죄를 범하여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벌칙) (생략) <u><신설></u>	제50조(벌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50조의 죄를 범하여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법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소방대의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 장비파손 등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 방해죄 관련 조문>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개정안은 소방활동 방해행위를 하여 소방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¹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가해자에게는 그 결과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과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벌칙(상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은 현행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에 부과되는 법정형과 동일한데¹⁵⁾,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가해자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반면, 개정안의 경우 위력 사용뿐만 아니라 폭행·협박, 소방장비 파손,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사용 등 소방활동 현장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방해 행위가 규정되어 있음.

소방활동도 공무집행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볼 때 다른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상해 및 사망과 구분하여 구성요건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14)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15)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문 의 처
02)6788-5351